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9191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0176	남인순의원	2024. 6. 5.	
2200189	남인순의원	2024. 6. 7.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200334	김선민의원	2024. 6. 11.	(2024. 7. 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
2200379	김선민의원	2024. 6. 12.	2소위원회에 회부
2200380	성일종의원	2024. 6. 12.	
2200609	소병훈의원	2024. 6. 18.	
2200808	서영석의원	2024. 6. 21.	
2200952	김선민의원	2024. 6. 26.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201056	한정애의원	2024. 6. 27.	(2024. 8.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
2201093	김예지의원	2024. 6. 28.	2소위원회에 회부
2201250	한정애의원	2024. 7. 1.	
2201505	이수진의원	2024. 7. 8.	
2203723	김미애의원	2024. 9. 5.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
2204609	김태년의원	2024. 10. 8.	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4830	김선민의원	2024. 10. 22.	
2205233	김남희의원	2024. 11. 4.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205437	박수영의원	2024. 11. 11.	(2025. 1. 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
2205785	이수진의원	2024. 11. 22.	2소위원회에 회부
2206006	전진숙의원	2024. 11. 28.	
2207030	전진숙의원	2024. 12. 27.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207525	안상훈의원	2025. 1. 15.	(2025. 2.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
2207563	김 윤의원	2025. 1. 15.	2소위원회에 회부
2207994	강선우의원	2025. 2. 7.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바로 회부
2208014	강선우의원	2025. 2. 10.	(2025. 2. 19.)

- 가. 이상 2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2. 20.) 및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3. 2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나.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 3. 20.) 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제5차 재정계산(2023)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등의 변화로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4년 11월 기준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65만원으로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7년 도입된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대하여는 각 크레딧으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이 군복무 또는 출산으로 인한 가입이력 상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2022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관련하여서도, 휴·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5년 기준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 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
- 나. 12개월 내에서 실제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 다. 첫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폐지함(안 제19조).
- 라.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의 기존 인하계획을 중단하고, 2026년부터 명목소득대체율이 43%가 되도록 함(안 제51조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등).
- 마.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 터 13%가 되도록 함(안 제88조 및 안 부칙 제4조).
- 바.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 중 '납부 재개'를 삭제함(안 제100조의4).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을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개월을"을 "복무기간(12개월을 출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중 "2명인"을 "2명 이하인"으로, "12개월"을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둘째"를 "첫째 및 둘째"로, "12개월"을 "24개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200을"을 "1천290을"로 한

다.

제88조제3항 중 "45에"를 "65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90으로"를 "130으로"로 한다.

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 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를 "지역가입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7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4조제3항 중 "2027 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만분의 475
 - 2. 2027년은 1만분의 500
 - 3. 2028년은 1만분의 525
 - 4. 2029년은 1만분의 550

- 5. 2030년은 1만분의 575
- 6. 2031년은 1만분의 600
- 7. 2032년은 1만분의 625
-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천분의 95
- 2. 2027년은 1천분의 100
- 3. 2028년은 1천분의 105
- 4. 2029년은 1천분의 110
- 5. 2030년은 1천분의 115
- 6. 2031년은 1천분의 120
- 7. 2032년은 1천분의 125
- 제5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 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은 지역가입자가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법에 따른 <u>연금급여가 안정적</u>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 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 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여야 하며. 이에-----하다.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① -----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 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 -----복무기간(12 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다)을----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
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u>다만,</u> 추가로 산입하
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1. 자녀가 <u>2명인</u> 경우 : <u>12개월</u>
-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③ (생 략) <신 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가 산입) ① <u>자녀가</u>
<u><단서 삭제></u>
1 <u>2명 이하인</u> <u>자</u>
<u>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u>
월 수
2
<u>첫째 및 둘째</u>
24개월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
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 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 1. 2. (생략)
- ②·③ (생 략)
-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생 략)
 -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 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 소득월액의 1천분의 <u>45에</u>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 ⑤ (생략)

1
<u>l</u> 천290을
<u> </u>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65</u> କ <u>)</u>
4
<u>130으로</u>
⑤ (현행과 같음)

-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전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생 략)<신 설>

<신 설>

세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	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u>지역가입자가</u>	
<u><</u> 삭 제>	

- 2. (현행과 같음)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받고 있지 아니할 것
 - <u>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u> 연금보험료 지원
 -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생략)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7 적용례) 2008년부터 2027년까 지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 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 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 18. (생략)
 - 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 20.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
- 제34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② (생 략)
 - ③ 2008년부터 <u>2027년까지</u> 연 도별 가입기간분에 대한 제51 조제1항 본문의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u>다</u>	. 법	를 제11	143호	국민	연금
	법	일부개기	정법률	부칙	제7
	조에	따른	연금	보험료	. 지
	원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u>2025년까</u>
지
1. ~ 18.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제34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② (현행과 같
<u> </u>
③ <u>2025년까지</u>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부칙 제	
20조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